

2019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1.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 시험 시간: 100분, 답안 분량: 문제당 1,000자 내외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노키즈존(No Kids Zone)’ 식당에서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식당에서 13살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제주시 7식당 사업주의 행위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이용 대상에서 13살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이 같은 진정을 낸 진정인은 지난해 9월께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2명, 9살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제주시의 이탈리아 음식점인 7식당을 방문했는데, 식당 사업주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13살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이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도, “이 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가 된 이탈리아 음식점의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사업주인 피진정인이 일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모든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식당 사업주의 노키즈존 운영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활동, 예술에 관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들며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됨이 우려되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나)

애덤 스미스가 발견해 낸 인간의 공통적 욕구, 혹은 성향(propensity)은 스미스 경제 분석의 바탕이 되고, 나아가 고전파 경제학의 기초를 이룬다.

그 첫 번째 성향은 바로 “모든 인간은 보다 잘 살고 싶어 한다.”라는 꽤 초보적인 명제다. 스미스가 발견한 것은 ‘현재 상황을 보다 개선해보려는 욕구,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잔잔하지만, 태아 적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욕구’였다.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무덤에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인간이 아무런 더 이상의 변화나 발전을 원치 않을 만큼 현실에 대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만족할 때는 단 한 순간도 없을 것이다.”라고 스미스는 적고 있다. 두 번째로, 스미스는 인간의 교역 본능을 지적한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남의 것과 바꾸고 싶어 하는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공통된 성향이다.”라고 말한다.

스미스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들을 사회가 억누르기보다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부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이기심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기에 정부는 이기적 인간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관용, 인정, 동포애 따위에만 의존하다가 가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국가는 빈곤해질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무작정 타인의 자비심에 기대한다는 것은 헛된 일이다. 자신을 도움으로써 타인들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은 뻗쳐 오게 마련이다. 시장 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생산, 교환, 소비, 직업 선택, 계약 등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기반 위에서 있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각 경제 주체들이 가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때 오히려 사회의 자원 배분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시장 경제의 중요한 기본 원리이다.

경제학사상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한 구절에서 스미스는 이렇게 공언한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 제조업자들의 박애심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아무리 돼지 잡기, 맥주 양조, 빵 굽기 등을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 일을 하루 종일 하려 들진 않을 것이다. 물론 스미스는 인간이 오직 이기적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는 하지 않았다. 스미스는 다만 이기적 본능이 친절함, 박애심, 희생정신 같은 것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 심성의 고귀한 측면에만 사회를 맡기고 미래를 의지할 수는 없다. 그 보다는 인간의 본능 중 가장 강한 본능인 이기심을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잘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다)

내가 당신을 방 안으로 데려가서 완전히 낯선 사람 옆에 앉히고 100달러를 준다고 하자. 당신은 낯선 사람과 돈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1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얼마를 쥐도 좋다. 상대방이 그 돈을 받으면 두 사람 다 그 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그 돈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100달러를 모두 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당신은 단 한번만 이 게임을 할 수 있고, 방을 나간 다음에는 게임에서 만난 사람을 결코 다시 볼 일이 없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서 이런 상황(註: 단발성 최후통첩게임이라고 한다)은 논리가 너무나 명확해서 이론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진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게임을 시험해 보자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여겨졌지만, 15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몇 년 전 에머리 대학교의 인류학자 조지프 헨리히(Joseph Henrich)가 이끄는 연구진이, 익명으로 진행되는 단발성 최후통첩게임 실험을 탄자니아 농부에서 페루 원주민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15개 문화권에서 실시했다.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내기에 걸린 돈을 그 문화권에서 하루나 이틀의 인건비로 정했다. 연구자들은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대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 동북부의 아체(Ache) 족과 인도네시아의 라멜라라(Lemelara) 족은 평균 50퍼센트 이상을 상대방에게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모든 문화권이 한결같이 경제적인 ‘이상’인 엄격한 이기주의에서 체계적으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야박한’ 문화권도 평균 25퍼센트 이상의 돈을 내놓았다. 평균적으로 ‘수령자’들은 대개 25퍼센트 이하일 때 돈을 받지 않았다. 헨리히와 동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많은 참가자들이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호혜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양보해서라도 물질적 보상을 공정하게 하려고 했고, 협력적인 사람들은 잘 대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손해를 무릅쓰고 벌을 주려고 했다.”

우리는 위와 같은 현상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문명과 공동체의 형성, 사회적 질서와 조화, 더 나아가 발전이 개인의 이기심을 자발적으로 억제하고, 또 호혜적 협력이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강하게 처벌하는 규율의 확립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는 결국 공익 또는 공동선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자유의 행사가 공동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엄청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영세한 중소기업은 살아남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선이 아무런 제한 없이 추구되면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하는 공동선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평등이란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인정하고 있다. 합리적 차별이란 선천적 조건과 후천적 차이를 고려한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만 생리 휴가를 주는 것, 누진세 제도, 가중처벌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권위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는 차등 행위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첫 번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차별 취급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 기능이 필수적인 직업에서 해당 기능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을 채용하거나, 소방대원 채용에서 진화 작업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갖춘 사람만 지원을 허용하는 것 등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비교 대상이 같아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여기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비합리적 차별은 동

일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할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면, 공공 기관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만 뽑는 것 등이 비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차별 대우를 받는 양쪽이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학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만 같으면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수시 논술 전형에서는 이를 테면 내신과 논술 성적의 합이 같아야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1】

(가)에 제시된 인권위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가? 제시문 (나)와 (다)에 드러난 관점을 따를 때 각각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노키즈존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000자 내외)

【문제2】

제시문 (라)에서 설명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기>의 행위들을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 것과 비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누고, 각각을 그렇게 나눈 이유를 쓰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시문 (가)의 노키즈존 식당에서 이루어진 차등 행위가 합리적 차별인지 아닌지를 상세히 논술하시오. (1,000자 내외)

----- <보기> -----

- (1) 게임방에서 10시 이후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 (2)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흑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
- (3) 신발 가게에서 비장애인용 신발만 팔고, 장애인용 신발은 팔지 않는 것
- (4) 동성 간의 혼인 신고를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